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79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

I. 개요

1.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17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7. 27.
- (3) 회 부 일 : 2026. 7.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함. 한편, 이러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 또는 재산이 각각 1억 3천만원 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양의무자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산정 시 가구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상의 소득·재산만을 산정하고 있어 부양의무자가 주거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에도 단지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중단될 시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생계가 곤란하게 될 수도 있음.

이에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산정 시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여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되, 소득·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단계적 차등을 두어 생계급여를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0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산정 시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되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략)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u>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u> 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②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 ----- ----- ----- ----- ----- ----- -----.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 8. (생 략)

③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

1. 소득·재산(주거지·학자금 마련 용도의 대출금 등 생활안정 및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를 공제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제8조 제2항 제2호-----

-----.

1. ~ 8. (현행과 같음)

③ -----

-----제8

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조제2항제2호-----

-----.

제10조의2(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특례)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이하 이 조에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라 한다)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 무자의 소득·재산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한선을 초과하여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보되, 그 부양의 무자의 소득·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및 생계 곤란 정도에 따라 단계적 차등을 두어 생계급여를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감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것 외에도 일정한 부양의무자 기준, 즉 부양의무자¹⁾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²⁾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당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폭넓게 고려하여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부양비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21년부터 대폭 완화되어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조치의 연혁 >

구분	개선 내용
‘20	▶ 중증장애인 포함 수급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선정 가능
‘21	▶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선정 가능
‘21	▶ 생계급여 전체 수급권자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월~) * (예외규정)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 제외
‘25	▶ 부양의무자 예외규정 추가 완화(‘25.1월~) * (예외규정)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1.3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12억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 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으나, 부양의무자에 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가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산정할 때 주거 또는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 등 생활안정 및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되 그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려는 것임.

□ 현행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준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으나, 동일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채의 유무 및 규모에 따라 실제 경제적 여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재산 산정 시 생활안정 및 자녀교육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부담한 부채를 공제하도록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여력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고, 현행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지원 필요 계층을 추가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상 근로를 통한 소득 확보에 제약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7%로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고용률 63.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의료비·교통비·간병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도 월평균 약 25만 8천원에 이르고 있음³⁾. 따라서 중증장애인은 소득 확보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 부담은 큰 집단이라는 점에서 공적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

< 장애 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

(단위: %)

구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전체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8.3	44.2	64.7
고용률	27	42.4	63.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7만 8,700원, 보호·간병비 4만 2,300원, 교통비 3만 4,800원 등 장애로 인해 월평균 약 25만 8,00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특히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스스로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할 가능성이 낮은 중증장애인은 곧바로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보건복지부가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요건을 폐지하고, 노인 등 다른 근로취약계층에 대해서도 2028년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는바,

< 보건복지부 핵심 추진과제 일부 발췌 >

- (소득안정) 기준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결정^(26.7.),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27.~), 의료급여 건강 성과 중심 의료급여 혁신^{**('27.~)}

* (생계) 중증장애인 우선 폐지('27.~), 노인 연령대별 순차 폐지 검토('28.~)
(의료) 중증장애인, 중증 희귀질환 및 거동불편 노인 등 의료돌봄 필요 높은 대상부터 개선 검토('27.~)

** 예방부터 재활·회복, 지역사회 안착까지 적극 보장하여 중증화 및 사회적 입원 방지

자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26.7.16.)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임을 고려하면, 취약계층별 특례를 개정안과 같이 개별적으로 법률에 추가하는 방안과 정부의 제도 개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반기 6개월분 346억 9,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 시 약 7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27년 생계급여 사업 예산안 일부 발췌 >

○ 제도개선

- ('26년)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 상이
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 등 제도개선 과제(15,963백만원)

→ ('27년) 근로취약계층 부양의무자 예외 규정 기준 완화*(+2만 가구) 추진
(27년 하반기)(34,695백만원)

*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부모 또는 자녀 가구에 고소득연
1.3억·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 폐지

자료: 보건복지부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부채공제와 관련,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서면 제출), 금융재산 조사 등도 새롭게 검토하여야 하므로 소득, 일반재산만 확인하고 있는 현재와 달리 오히려 절차상 진입장벽이 될 우려가 있고,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 장애·고령 등 근로취약층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할 예정('27~)으로, 법률 개정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1】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4)
--------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 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일부)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36,400만원), 경기(29,400만원), 광역·세종·창원(28,300만원), 기타(19,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2.08%)

구 분		내 용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4)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고 2】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수급 현황⁵⁾
---------------	---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25년 (중위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6년 (중위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27년 (중위 32%)	875,533	1,433,805	1,829,789	2,217,563	2,580,166	2,921,344

<연도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가구원수별 가구수 추이>

(단위: 가구)

구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이상
'23년	1,200,418	971,371	162,115	43,074	15,970	5,330	1,673	885
		80.9%	13.5%	3.6%	1.3%	0.4%	0.1%	0.1%
'24년	1,268,179	1,031,836	166,944	44,530	16,580	5,599	1,754	936
		81.4%	13.2%	3.5%	1.3%	0.4%	0.1%	0.1%
'25년	1,392,291	1,135,721	181,861	47,888	17,980	6,017	1,893	931
		81.6%	13.1%	3.4%	1.3%	0.4%	0.1%	0.1%

<연도별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가구수>

(단위 : 가구, 명)

구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수	수급자수	
'24년	1,268,179	1,593,996	99,707
'25년	1,392,291	1,746,217	104,471
'26.6월	1,463,986	1,835,356	107,430

5) 자료: 보건복지부